

취미코너

흔히 人類社會에는 航시 三才鬪爭의 현상이 일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첫째는 人間대 人間의 투쟁이며, 둘째는 人間대 自然의 투쟁이며, 셋째는 人間대 動物의 투쟁아 곧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름아닌 첫째의 것은 人間社會에서 벌어지고 있는 生存競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의 것은 風水書, 海溢 또는 地震따위의 엄습으로부터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의 것은 주로 총기를 사용해서 행하는 사냥(狩獵)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의 자연에 대한 守勢的 受動的 투쟁을 제외하면 나머지 生存競爭이나 狩獵같은 것은 모두 人間쪽으로 부터 攻勢的 能動적으로 걸고 달려드는 일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平和니 善隣정신이니 하는 말을 아무리 힘주어 외쳐보더라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世態이지만 그럼에도 또 어느 社會學者の 悲嘆어린 말처럼「人間은 人間에 대하여 狼」이라고 한 으르렁대며 싸우는 好鬭本能을 고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人間족 속일반이 帶行하고 있는 属性 인양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人間의 動物에 대한 처우는 또 어찌해 았는가. 19세기 불란서 샤망(Charment)이 제창한 「法의 社會化」(Socialization of law)라는 새로운 思想에 따르면 法을 종래의 것보다도 한층 包容力 있고 넓은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法을 社會의 全成員의 利益이 되도록 인식함으로써 人類의 전부가 法의 利益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人類자체를 넘어서 動物에게 까지 미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人類와 함께 社會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사회를 위해서 노동하고 사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動物에게 까지도 法에 의한 보호가 소외되지 않고 飼育主의 無情과 暴力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動物虐待禁止法이나 狩獵規則이니 또는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같은 것은 모두 法의 社會化思想이 담겨져있는 그의 具體的인 表現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을 잡을때 잡더라도 옛 原始狩獵時代와는 달리 잘 育成保護增殖케 함으로써 계획성있고 調節力이 가미된 捕獲을 행하라는 말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는 사냥을 매우 좋아합니다. 올



邊宇昌

(前高大法大教授·法博)



접어 들었

들어 꼭 반세기의 繼歷에 옵니다. 항상 나의 사냥은 捕獲主義로서가 아니고 心神鍛錬의 手段으로서 해 왔으며 大物多獲主義를 버리고 안전제일주의에 住하고 있었읍니다. 五十年동안이나 총을 쏴댔다는 사람이지만 산돼지 한마리 잡아본 일이 없고 또 잡으려고 애써 본 일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못잡아본 짐승이 없었읍니다.

大小間의 총기사고 같은 것은 물론 한번도 없었음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古稀를 넘긴 지금에 있어서도 영리하고 잘 훈련된 포인터를 앞세우고 마음대로 이를 조종함으로써 錦繡山野를 즐다

하여 종횡으로 跋涉하는 나의 剛健한 心神力은 아무에게도 讓步할 수 없는 두번째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총을 메고 村落을 거쳐서 거닐라 치면 운동모자밑으로 흘러내린 나의 白髮을 보고 어떤 村老는 앞으로 다가와서 나의 나이를 물고는 놀라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위 狂境에 달한 嗜好가 되다보니까 일반은 書籍 같은 것은 멀리하고 있는듯 하나 나는 사냥에 관한 책도 비교적 많이 탐독했읍니다. 邦書, 日本書籍, 그리고 西洋雜誌등 등 닥치는대로 읽어 보았읍니다. 왜지 한마리 못잡아본 밥飽手인데다理論砲手도 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간후 내가 내노라하며 총이 어떻게 사냥개가 어떻고, 나아가서는 사냥의 秘法이란 저터구 하는 식으로 號曰百万의 自家論理를 열심히 들어놓는 仁이 있을라치면 한번만 들어도 그의 假偽나 誇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내기에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사람들 가운데는 사냥꾼을 가리켜서 뻥쟁이니 거짓말쟁이 (liar)니 말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墨守派의 老砲手같은 사람은 在來式思考에 사로잡혀 있다고 나 할까, 말하기를 총을 잘쏘기만 하면됐지 개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뭇 獨專道通論을 폄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말들을 때에는 인식부족도 이만저만이 아니로구나 하고 놀라움을禁할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총을 정확하게 쏴대는 名人이라 할지라도 사냥물을 발견해 야만 될 것이겠고, 총알도 일반적으



로는 實彈이 아닌 霰彈이고보면 有效거리가 지극히 제한돼 있는 것이 기때문에 그 유효권내에 들도록 사냥물을 찾아주는 必須不可缺의 助手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其實 사냥에 있어서는 鳥獸類를 막론하고 主人格으로 활동하지만 한낱 助手로밖에 처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냥개 포인터 - 인 것입니다.

그助手야말로 万物의 盡長이자 尺度인 人間에 비해서 4천배의 高性能 嗅覺을 지니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듯 합니다. 그래서 西洋社會에 있어서는 사냥에 관해 일찍부터 첫째는 개(First dog) 둘째는 다리

(Second leg) 셋째는 총(Third gun)이라는 不文의 金言이 확립돼 있을 정도입니다.

一見 사냥을 하는데는 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전부인양 생각되기가 쉽지만 實은 그런것이 아니고 사냥개의 役割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高度의 嗅覺활동을 통해 사냥물을 索出해내는 사냥개를 놓칠 세라 바싹 따라붙을 수 있는 끈기있는 人間의 健脚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가지의 先行的 協同作業이 잘 이루될 수 있다면 총을 쏴서 사냥물을 的中시키는것 쯤은 그리 어려운 일로 보지 않으며 누구나 대개 다 할수있다

는 뜻인 것입니다. 참고삼아 한가지 소개하려는 것은 美國사냥사회에는 좀 색다른 사냥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는 put and take라는 制로서 定한 代金을 내고 꿩을 몇마리인가 산다음 그 꿩을 숲속에다 놓아주고 put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뒤를 다우쳐서 잡는 take식의 스포츠인 것입니다. 못잡아도 그만이고 안잡혀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制의 趣意로 하는 바는 말할 것도 없이 捕獲主義에 의한 것이 아니고 心神鍛鍊主義를 指하고 있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들에서 행하여지는 여러가지 스포츠 가운데서 銃器를 통한 골프나 필드하키의 变形的 스포츠로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한된 지역관계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原始時代의 狩獵생활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近代國家로 들어와서 부터는 거래의 나라가一定規律을 정하고 銃器를 사용하는 사냥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하나의 文明的 現象으로서 보지 않을 수 없는것 같습니다. 未開의 群小國家에서는 아직 制度로서가 아니고 사냥을 慷意的으로 放置해 두고 있는 형편이어서 銃器아닌 다른 雜多

手段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大國중에서도 中共같은 나라는 아직 사냥이 制度로서 확립돼 있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냥의 허락을 文明的 現象의 하나로 보는 이상 그곳에는 반드시 鳥獸類에 대한 育成과 保護, 나아가서는 그 繁殖策까지도 확립돼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해당 官署의 助長 支援과 내지는 團束法規類 도完備돼 있어야 함은 말할것도 없 것입니다.

英國에는 일찍부터 狩獵倫理(Hunting Ethics)라는 것이 있는데 그가운데서 異彩의인것 한가지만을 들어보면 「한타」가 꿩을 쏘려고 총을 겨누었다가도 그 총뿌리 앞을 날리는 꿩이 어린 (稚雉) 것일 때에는 발사를 중지하고 슬그머니 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또한 狩獵規則(Hunting Regulations)이라는 것이 있어서 읽어보면 몇군데의 特異한 점이 눈에 띠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큰사슴(moose)이나 사슴(deer)이 水泳을 할때는 고통을 주거나 射擊을 加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가하면 「連發銃은 三連發만 가능하도록 마개(栓)를 막아야 한다」든가

「捕獲鳥獸의 고기를 賣買하거나 交換하는 것은 違法」으로 돼 있으며 「일요일에는 수렵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것 등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점에 이르러서는 각국 특유의 歷史, 倫理感情, 自然環境 및 山林政策如何등등에 의해 서 결정지어질 문제이므로一律性을 찾아보기란 어려우며 規律上의 지그자그가 매우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현행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법률가운데도 「山林府長은 鳥獸의 保護, 繁殖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狩獵鳥獸의 種類, 그 捕獲物의 数量, 例域, 期間, 猶具 및 方法을 정하여 그 捕獲을 禁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第3條第3項)고 돼 있으며 「山林府長 또는 道知事は 鳥獸保護繁殖을 위한 目적이達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鳥獸保護例를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同條第7項)고 돼 있는 것이라든가 「…鳥獸를 捕獲한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 또는 讓受하지 못한다」(第20條)고 돼 있는 것이라든가 「…鳥獸(加工한 것을 포함)는 이를 販賣하지 못한다」(第3條)고 돼 있는 것 등등 위에 말한 英國과 캐나다의 경우와 함께 法의 社會化思想의 영향밑에 만들어진 法規範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人道主義란 원래 人間對 人間의 人格者 사이에 있어서 풍겨지는 드높고 아름다운 情景임에는 틀림없지만 非人格의 動物에 대해서 까지도 일종의 人道主義을 베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近代國家로 들어와서 부터 사냥이 하나의 制度로서 인정되게 된 것을 以하여 文明的 現象이라고 말한 所以然 입니다.